

#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 장비 운영 지침

## 가. 사용자의 의무

- 1) 사용자는 장비 사용 전 상세설명의 사용 유의사항과 장비 앞에 비치된 매뉴얼을 필독하고 숙지하여야 한다.
- 2) 사용자는 장비 및 시설의 원활한 작동 및 연구 환경 유지에 협조해야 하며, 센터 관리자의 적절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3) 사용자는 장비 사용 전 반드시 예약하고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후 장비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4) 센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  - ① 공동기기실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거나 제반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할 때
  - ② 부정 사용으로 인해 입실 제한하에 있을 때
  - ③ 실험실에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
- 5) 장비 예약 취소는 최소 예약 1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, No-Show의 경우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가 청구된다.
- 6) 직접사용자(Self-user) 자격이 부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장비 사용이 없는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.
- 7) 사용자는 해당 기기의 이용 기간 동안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, 기기의 손상,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해 책임지고 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보상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8) 사용자가 기기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아래 부과 기준에 따라 장비 사용료의 3~10배를 부과하여야 하며, 해당 사항은 사용자 및 연구실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통지된다.

### <부정 사용에 의한 추가 장비 사용료 부과 기준>

- ①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초과 사용한 시간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장비 사용료의 3배 부과 (최소 예약 시간 단위 적용)
- ② 사용 시간을 예약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의 5배 부과
- ③ 직접사용자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사용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의 5배 부과
- ④ 사용 미숙 또는 부주의로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장비 내 부품을 파손 및 절도한 경우 장비 사용료의 10배 부과

## 나. 사용자에게 대한 패널티 부과 기준

- 1)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월 단위로 패널티가 부과되며 패널티가 3회 축적되는 경우 센터 출입이 즉시 취소되며 한 달 후 출입 신청이 가능하다.
  - ①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초과 사용한 시간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
  - ② 사용 시간을 예약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
  - ③ 직접사용자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사용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
  - ④ 사용 미숙 또는 부주의로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장비 내 부품을 파손 및 절도한 경우
  - ⑤ 실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예약하는 경우
  - ⑥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장비를 예약하거나, 사용 불가 공지가 게시된 시간에 예약하고 사용하는 경우
  - ⑦ 장비 사용 중 사용자에게 조작이 허용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
  - ⑧ 장비 사용 중 장비의 이상이나 고장을 발견한 후 장비 담당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은 경우
  - ⑩ 장비 사용 중 사용자 부주의로 장비의 부속 부품을 분실한 경우
  - ⑪ 장비나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료 전처리를 하지 않아 장비의 손상 및 고장이 초래된 경우
  - ⑫ 장비를 사용한 후 장비 로그북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하지 경우
  - ⑬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
  - ⑭ 실험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

### <장비 패널티 부과방법>

- 패널티 1회 부과: 센터 관리자가 장비 사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 (위 ①~④번의 경우 지도교수 참조)
- 패널티 2회 부과: 센터 관리자가 장비 사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 (지도교수 참조)
- 패널티 3회 부과: 센터 관리자가 장비 사용자 및 지도 교수에게 통보 (센터 한 달 이용 금지 공지)